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및 자원 법제에 대한 검토

명한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I.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제도 개관

1. 브라질 국가 개요

브라질의 정식명칭은 브라질연방공화국(Federative Republic of Brazil)으로, 면적은 남미 대륙의 47%인 약 851 만 km² 로 세계 5 위이며, 인구는 2008 년 현재 약 1 억 9 천만명에 이르는 대국이다.

브라질의 국가조직은 연방주의 및 3 권 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방 정부와 26 개 주정부로 구성된 행정부, 양원제인 연방의회 및 주의회로 구성된 입법부, 3 심제인 사법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과의 외교관계, 국제교역, 국방, 화폐 발행,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수립, 각 주정부간의 통산관계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며,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 주 헌법 제정 등의 자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노사관계, 환경, 조세 문제 등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동으로 규정한다.

브라질의 2010 년 1 인당 GDP 는 1 만 816 달러에 이르며, 물가, 재정, 국제수지, 외채 등 거시경제 전반의 지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2014 년 브라질 월드컵, 2016 년 리우 데 자네이로 하계 올림픽 개최 준비를 겸한 2010 년 3 월의 2 차 경제성장촉진계획(PAC)을 추진하고 있는바, 에너지

개발, 교통 인프라 개발, 식수 및 전력공급 확대,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도시 정비의 6 개 분야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복잡한 법체계, 높은 세금과 금융비용, 관료주의로 인한 투자 장애 요인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자본투자에 대한 규제 개관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신흥 개발국가들이 외국인의 자본 투자에 관하여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설정해 두어 규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브라질은 외국인의 자본 투자에 관하여 정부의 인허가 관점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본금 송금과 관련하여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외환송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자본금 송금에 관한 최소한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다.

브라질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브라질 중앙은행에 관련 법(Law No. 4,131/1962, Law No. 11,371/2006)이 정한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대한 등록은 세금이나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브라질 내로 자금이 유입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본금 송금에 대한 등록 절차는 중앙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에 투자자가 직접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브라질 중앙은행에는 SISBACEN (Sistema de Informações do Banco Central / Central Bank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바, 외국인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는 SISBACEN 에 직접 접속하여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SISBACEN 내에는 외국인 직접투자(IED : Investimento Estrangeiro Direto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위한 별도의 전자등록 모듈(RDE :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 / Electronic

Declaration Registry)이 마련되어 있어, 이 모듈을 통해 SISBACEN 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통상 투자의 대상이 되는 현지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자본금 송금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SISBACEN 에 접속하여야 하며, 기존 등록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 사용자로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신설된 현지법인에 관한 정보(CADEMP : Cadastro de Empresas)를 시스템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법인은 CADEMP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RED-IED 번호도 부여받게 된다.

자본금 등록의 절차는 2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즉, 현지법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출자약정을 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약정에 대하여 출자를 받게 되는 브라질 현지법인은 이러한 출자약정의 내용을 해당 출자약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SISBACEN 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출자약정에 따라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납입 후 30 일 이내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컨대, 출자약정 후 브라질 현지법인이, 자본금 납입 후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출자약정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약정의 날짜, 출자약정 가액, 주식수, 법인의 순가치에 관한 정보, 거주자/비거주자별 출자약정 금액, 각 비거주자별 출자약정 금액, 보통주/우선주의 내용(주식회사 경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록을 위해서는 RDE-IED 번호, 출자약정 결정일, 납입 금액, 납입된 비거주자 주식 수(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우선주 구분), 납입일, 투자유형(단독/합작)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면 향후 해당 자본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국외 송금이 가능하다.

2. 지사와 현지법인

가. 개관

외국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진출초기에는 대리점이나 연락사무소 등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고 투자대상국의 행정 및 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간단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시장조사가 완료되고 투자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면 지사, 현지법인, 합작투자의 형태로 투자형태를 전환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설립절차 면에서 브라질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및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어느 쪽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브라질 진출 시 보다 유리한지를 살펴본다.

나. 지사 설치와 법인 설립의 차이점

설립절차 면에서 대표적인 현지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와 지사의 단적인 차이는 연방정부 허가의 필요 여부이다.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 연방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지사의 경우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사 설립에 따른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② 지사자본금(capital destinado às operações no país)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대략 3~6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연방정부의 허가는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된다. 대통령령과 기타 관련문서들은 모두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데, 그 사본을 해당주의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함으로써 지사로서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지사 설립의 경우 법정 유보금, 최저 배당의무 및 관련 회의록 작성의무 등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사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하는 등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 때문에, 지사 설립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는 않다.

또한 조세적인 측면에서도 지사는 그다지 유리한 면이 없다. 지사는 브라질회사와 동일한 법인세(15/25%)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유관기관은 외국기업의 지사를 본사의 연장으로 보고 세무, 금융 등에서

관리 및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지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본사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브라질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유리한 점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사 방식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하고, 같은 이유에서 많은 외국 투자자들 또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브라질에 진출하고 있다.

3. 법인의 종류

브라질법상 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 주식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가 있다.

브라질의 유한책임회사(LTDA)는 한국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형태로 이해되고, 주식회사(S.A.)는 한국법상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이다.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는 한국법과 유사하게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형태이다.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납입자본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된다. 주식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는 주식의 발행으로 사원관계가 형성되지만, 회사의 운영은 주주만이 이사가 되어 할 수 있고, 주주가 회사의 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형태로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회사 유형 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주주 또는 사원의 무한책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징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이다.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는 주주 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그 운영과정상의 회사지배구조나 자금조달 방법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4.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

두 회사 모두 사원 또는 주주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납입이 예정된 자본금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점, 설립단계에서 2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를 필요로 하는 점, 특별한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는 점 및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주식회사(S.A.)에 요구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의무, 설립자본금의 최소 10% 현금납입의무, 최저배당 요건(순이익의 25%), 이사회 설치의무, 설립정관 공고의무 등이 유한책임회사(LTD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가 주식회사(S.A.)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채 및 증권발행이 금지되나 주식회사(S.A.)는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 사원 전원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인적회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양도 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유한책임회사가(LTDA.)가 주식회사(S.A.)보다 유리한 사업형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5.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설립절차

가. 유한책임회사(LTD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 10,406 호)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주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do Estado)에 정관을 등기해야 한다. 정관을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정관 외에 외국투자자의 주소, 목적사업, 자본금 및 임원 등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Prova de existência legal, proof of legal existence)와 브라질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들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야 유효하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에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고, 정관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설립 이후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주식회사 (S.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가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 10,406 호)의 규율을 받는 데에 반해, 주식회사(S.A.)는 주식회사법(Lei das Sociedades Anônimas, 법률 제 6,404 호)의 규율을 받는다. 주식회사(S.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총회(Assembléia de Fundação)를 통해 정관을 채택하고, 자본금의 10%를 현금으로 은행에 납입해야 한다(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립 시에는 10%의 현금납입이 필수임). 또한 모든 출자자들이 서명한 공증계약서(Escritura Pública) 또는 설립을 결의한 출자자총회 의사록을 정관과 함께 당해 관할 주 상업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다. 공통적인 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든 주식회사(S.A.)를 설립하든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송금 등록이 요구되는데, 송금 등록은 위에서 본 중앙은행 "SISBACEN"라는 전자 시스템에 회사 정보, 투자자 정보와 송금 금액 등을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정관 등을 당해 주 거래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완성되지만, 회사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① 연방 법인납세등록(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ídica), ② 주 법인납세등록(Inscrição Estadual), ③ 시 법인납세등록(Cadastro de Contribuintes Mobiliários)을 취득해야 하고, 영업허가 등을 위해서는 시청등록(Cadastro na Prefeitura Municipal)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국의 안전검사(Vistoria do Corpo de Bombeiros)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국(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등록, 고용인 조합(Sindicato Patronal) 등록 등의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그 외에도 회사의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경허가나 감독기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가령 제약회사는 국가위생감시기관(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의 허가가 요구되고, 건설회사는 지방건축위원회(Conselho Regional de Engenharia, Arquitetura e Agronomi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운영상 특이점

가. 유한책임회사(LTDA.)의 운영상 특이점

유한책임회사(LTDA.)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성상 사원들의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회사가 운영될 수 있고, 주식회사에 비해 지배구조가 간단하다. 유한책임회사(LTDA.)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지 않고, 사원총회(Assembléia dos Sócios)를 두게 되는데, 사원총회는 유한책임회사(LTDA.)의 최고 기관으로써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다. 민법은 사원총회 필수결의사항으로 업무집행자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인수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대신 사원들의 간담회(Reunião dos Sócios)를 통하여 결의하거나, 모든 사원들이 서명한 문서로 결의할 수 있다. 간담회 진행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 규정이 적용되나, 간담회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재정상태와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위원은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는데, 감사위원은 브라질 거주자이어야 하고, 최소 3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한다.
- 업무집행자(Administrador)는 필수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규모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1명 또는 그 이상 둘 수 있으며, 사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사원총회 또는 경영위원회는 이들 기관 외에도 이사회 또는 회사 업무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들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나. 주식회사(S.A.)의 운영상 특이점

주식회사(S.A.)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Assembléia dos Acionistas), 경영위원회(Conselho de Administração), 이사회(Diretoria) 및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를 들 수 있다. 주주총회(Assembléia dos Acionistas)는 주식회사(S.A.)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관변경, 이사 선임(경영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 선임, 사채 발행, 해산 결정 등을 필수결의사항으로 한다.

- 경영위원회 (Conselho de Administração)는 임의기관으로서 주주로만 구성되며, 주주총회의 필수결의사항 외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사업 지침의 결정,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의 활동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상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도 할 수 있으나, 경영위원회가 업무집행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이사회 (Diretoria)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경영위원회가 이사를 선임하지만, 경영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며, 브라질 거주자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사는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관에는 각 이사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공동으로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Conselho Fiscal)는 주주총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구성원들의 경영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위원 선임 및 실제 활동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즉, 정관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 최대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 경영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지배구조 기관들로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별도 기관들이 구성될 수 있다. 참고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임의기관인 경영위원회는 상장주식회사에서는 필수기관이다.

II. 브라질의 광업법제

1. 개요

가. 관계법령

1988년 브라질연방 헌법 제 9 장 제 20 조, 제 176 조에 따르면, 광물의 매장이나 상업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브라질 영토에 소재한 모든 광산은 연방의 소유에 속한다. 광산은 광산이 위치한 부동산과 분리된 권리로 간주되며, 광산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권은 Decree-Law No.227(1967년 2월 28일 제정, 이하 «광업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광업령(Decree No.62,934, 1968년 7월 2일 제정, 이하 «광업령» 또는 «광업법»과 합하여 «광업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여되고 보장된다.

브라질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은 브라질 국적의 자연인 또는 브라질에 본점이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인허가(예컨대 탐사권과 채광권)를 받아 할 수 있다. 탐사권 및 채광권은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인허가를 받아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연방헌법 제 176 조).

한편 광물이 매장된 지하를 탐사 및 개발할 권리와 지상권은 서로 분리되어 취급되기 때문에, 탐사권이나 채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 토지 소유자와는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광업권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Decree 23,079/1934 에 의해 설립된 국가광업생산국(The National Department of Mining Production, DNPM)은, 광업법에 근거하여 광업활동을 감독하고 관련 규칙이나 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 광업에너지부(the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MME) 산하의 연방정부기관으로 브라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광업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광업권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업권자는 탐사 및 생산, 상업화의 전 과정에서 DNPM 감독관의 조사와 감독에 협력하여야 하며, DNPM 에게 기술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광업권의 종류와 내용

가. 광업법의 규정에 따른 분류

광업법 제 2 조에서는 광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① 승인(Authorization Regime): 석유, 가스, 방사능물질 등 연방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광물에 속하지 않고, 지방행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광물(이하 «유용광물»)을 대상으로 함. 국가 광물생산국의 General Director 가 발급하며 탐사에 관한 허가(Permit)에 근거하여 발급됨
- ② 면허(Concession Regime): 유용광물을 대상으로 함. 탐사를 완료하고 채광 단계에서 발급되는 것으로 광업에너지부(MME) 장관이 발급
- ③ 허가(Permission Regime):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포함한 특정광물의 탐사 및 생산을 위해 발급되는 허가로서 국가 광물생산국의 General Director 가 허가조건 결정
- ④ 인가(Licensing Regime): 건설에 사용되는 광물(sand, red clay 등)을 대상으로 지방행 정부가 규정에 따라 발급. 국가광업생산국(DMPD)에 등록하여야 함
- ⑤ 독점(Monopoly Regime): 석유, 가스, 방사능 물질을 대상으로 함. 특별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 부여 및 조건 결정

⑤의 Monopoly Regime 은 석유 및 가스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광업법 제 2 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부여 및 조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아래에서는 ①~④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나. Authorization Regime - 유용광물 탐사권

광업법 제 7 조에 따르면 광산의 개발은 DNPM 이 발급한 탐사권(exploration authorization)과 MME 가 발급한 채광권(mining concession)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광업법에 따르면 탐사권은 광물탐사허가(Permit)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되며, 광상의 범위를 결정하고 광상에 포함된 매장량 분석과 사업타당성 평가를 광업활동의 범위로 한다(광업법 제 14 조).

탐사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DMPD 에 제출하여야 한다(광업법 제 16 조).

- i.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국적, 결혼 여부, 직업, 주소, 납세자번호/ 기업의 경우 상호, 정관 등록번호, 주소, 납세자번호
- ii. 수수료 납부 증명¹
- iii. 탐사하고자 하는 광물의 종류 특정
- iv. 탐사하고자 하는 지역이 속한 주 및 지방자치단체, 탐사면적(ha)
- v. DNPM의 General Director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탐사 예정 지역 도면
- vi. DNPM의 General Director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탐사 지역 주변 현황
- vii. 일정과 예산을 명시한 탐사 일정 계획

탐사신청이 거부된 경우 연방 관보에 탐사신청의 기각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의제기의 기각 결정이 연방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광업에너지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광업법 제 19 조).

탐사보고서가 승인된 경우, 해당 탐사권의 보유자는 1 년간² 채광권 발급을 신청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해당 기간 내에 채광권 조건에 관한 협의의를 마쳐야 한다(광업법 제 31 조).

승인된 탐사보고서의 보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 허용된 기간 내에 채광권 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 기간의 종료로 채광권 발급 신청권은 실효되며, DNPM의 General Director는 연방 관보에 해당 광구의 입찰에 관한 공고를 할 수 있다(광업법 제 32 조).

¹ DNPM의 웹사이트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2011년 3월 30일 현재 탐사신청수수료는 549.84헤알로서 신청서 제출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²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승인된 탐사보고서의 보유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은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다. Concession Regime - 채광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탐사가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고 DNPM 이 해당 보고서를 승인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제출자(탐사권 보유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채광권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채광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i.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
- ii. 채광될 광물의 특징(탐사허가와 승인된 보고서 내용 인용)
- iii. 광산의 가치와 위치
- iv. 채광 지역의 지리적 위치
- v. 채광 지역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관계
- vi. 광산의 상업 개발 계획,³ 개발 과정 및 설비 등을 명시할 것
- vii. 광산의 상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능력과 계획을 입증할 자료

라. Licensing Regime - 모래 등 건설자재용 광물의 채취권

법률 No.6,567 제 2 조에 따르면 모래 등 건설자재용 광물⁴의 채취권은 광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해당 광물에 대한 채광권을 보유한 자 포함)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모래 등 건설자재용 광물의 채취권은 DNPM 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해당 광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로부터 채취인가를 취득해야 한다(제 3 조).

채취인가의 취득을 위해서는 ① 개인인 경우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② 재무부에 광물 관련 납세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③ 광물을 채취할 장소를 특정한 도면

³ 광산의 상업개발계획에는 채련방법, 조광, 정제, 이송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광업법 제39조)

⁴ 모래 등 건설자재용 광물로서 지방행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채취권에 의하여 채굴이 가능한 광물로는 (i) 건설자재용 모래 및 자갈, 산업공정을 통해 가공되거나 산업공정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ii) 담이나 배수로, 지표, 자갈 등에 사용되는 석재, (iii) 세라믹 제조에 사용되는 점토, (iv) 건설자재용 석재, 농업용 목적으로 토양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암이 있다(Decree No.6,567 제1조).

을 제출해야 한다. 채취권의 발급은 50 헥타아르 이하로 제한된다. DNPM 에 채취권을 등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제 5 조).⁵

채취권은 해당 광물의 개발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작업이 6 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채취권 보유자가 채취인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광물을 개발하는 때에는 DNPM 의 General Director 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제 10 조). 채취권이 취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있는 제 3 자면 누구나 해당 광물의 개발을 등록할 수 있으며, 취소된 채취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는 광물개발을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광물개발을 등록한 자는 토지의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Permission Regime - 특정광구에 대한 개발허가

Permission Regime 은 법률 No. 7,805 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시행에 대해서는 Decree No. 98,812 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Decree No. 98,812 제 1 조에 따르면 Permission Regime 은 종전에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DNPM 이 설정한 기준(광물의 종류, 위치, 상업성 등을 고려)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특정광구에 적용된다.

먼저, 도심에 위치한 광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permission Regime 이 적용된다(제 3 조). Decree No. 98,812 제 5 조에 따르면 금, 다이아몬드, 주석, 컬럼바이트, 탄탈라이트, 철망간중석, 회중석, 금홍석, 장석, 석영, 녹중석, 백운모, 스포듀민, 레피돌라이트 등 귀금속은 Permission Regime 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광구에 대한 개발허가는 DNPM 의 General Director 에 의해 부여되는데 브라질인과 광업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광부조합에게만 허용된다. 특정광구에 대한 개발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i. 허가는 5년을 기한으로 발급된다. 기간의 연장은 DNPM의 재량에 따른다.

⁵ DNPM의 웹사이트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현재 채취권등록수수료는110.82헤알이다.

- ii. 허가는 전속적인 것으로 DNPM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DNPM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만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
- iii. 허가 지역은 50 ha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광부조합에게 허가를 발급할 때에는 DNPM의 재량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DNPM 이 탐사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허가를 발급받은 자는 연방 관보에 해당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개발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면적이 감소된다. 탐사계획이 수립된 경우 탐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주변 지역에 탐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다면 탐사 또는 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Decree No. 98,812 제 8 조).

해당 지역이 채광권 요건과 특정광물에 대한 개발허가 부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채광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DNPM 은 특정광물에 대한 개발허가도 발급하여야 한다. 채광권에 근거한 개발과정에서 특정광물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할 광물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연방 관보에 해당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새로운 광물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채광권자가 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DNPM 은 개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Decree No. 98,812 제 9 조).

특정광물에 대한 개발허가를 보유한 자가 채광권 부여 요건을 구비하게 된 경우에는 DNPM 은 재량에 따라 채광권을 발급할 수 있다(Decree No. 98,812 제 10 조).

바. 광업권의 비교

	Concession Regime	Licensing Regime	Permission Regime
근거 법률	Decree No.227 Law	법률 No.6,567	Decree No.98,812
DNPM 규정	DNPM의 General Director가 고시한 No.392 지침	DNPM의 General Director가 고시한 No.266 지침	DNPM의 General Director가 고시한 No.178 지침

<p>대상광물</p>	<p>유용한 광물 단, 연방정부 독점에 속하는 광물과 문화유적이거나 고고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광물, 지하수는 제외</p>	<p>(i) 건설자재용 모래 및 자갈, 산업공정을 통해 가공되거나 산업공정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ii) 담이나 배수로, 지표, 자갈 등에 사용되는 석재, (iii) 세라믹 제조에 사용되는 점토, (iv) 건설자재용 석재, 농업용 목적으로 토양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암</p>	<p>금, 다이아몬드, 주석, 컬럼바이트, 탄탈라이트, 철망간중석, 회중석, 금홍석, 장석, 석영, 녹중석, 백운모, 스포듀민, 레피돌라이트 등 귀금속</p>
<p>요건</p>	<p>채광권 발급 전에 탐사가 이루어져야 함 탐사권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발급, 채광권은 법인에게만 발급</p>	<p>토지의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서면 동의서 지방행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DNPM에 등록</p>	<p>관할 환경기관으로부터 사전 환경허가 취득해야 함 광구가 도심에 위치한 경우 관할 지방행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p>
<p>기간</p>	<p>탐사권:1-3년, 기간 연장 가능</p>	<p>지방행정부로부터 취득한 인가증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내용에 따름</p>	<p>5년 이내, 연장 가능</p>
<p>면적 제한</p>	<p>2,000/ 50ha 1,000/ 50ha</p>	<p>50ha</p>	<p>개인의 경우 50ha, 광부조합의 경우는 예외 가능</p>
<p>브라질 국적</p>	<p>필요</p>	<p>필요</p>	<p>필요</p>
<p>연차보고서</p>	<p>3월 15일까지 제출</p>	<p>3월 31일까지 제출</p>	<p>3월 15일까지 제출</p>

3. 광업권자의 의무

가. Authorization Regime

탐사허가신청이 승인된 경우 탐사권을 보유하게 된 자는 최종보고서를 DNPM에 제출할 때까지 매년 1ha 당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⁶

탐사권자는 탐사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탐사권자는 탐사작업의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DNPM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탐사권자는 DNPM이 탐사권 부여 당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탐사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탐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탐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탐사권자가 탐사지역의 소유자이거나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탐사권자는 탐사권 발급 사실이 연방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탐사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광업법 제 29 조).

나. Concession Regime

광업법 제 47 조에 따르면 채광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1) 연방 관보에 채광권 발급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광 개시 의무(단,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2) DNPM에 의해 승인된 세부채광계획에 따라 채광을 할 의무
- 3) 채광권리증에 명시된 광물만을 채굴할 의무
- 4) 채광권리증에 명시되지 않은 광물이 발견된 경우 즉시 DNPM과 협의 개시할 의무
- 5) 법령을 준수하여 채광작업을 이행할 의무

⁶ DNPM의 웹사이트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2011년 3월 30일 현재 탐사권 발급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1ha당 수수료는 2.02헤알이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3.06헤알이다.

- 6)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채광작업이 이행되도록 할 의무
- 7) 무리한 방법으로 채광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의무
- 8) 채광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직접적, 간접적 손해와 손실을 보상할 의무
- 9) 채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는 주택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
- 10) 채광작업이 이루어지는 주변에 손해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수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
- 11)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 12) 수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
- 13) 연방관측기구에 의해 지시된 조치를 취할 의무
- 14) DNPM과 사전 협의 없이 채광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의무
- 15) 채광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언제든지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
- 16)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채광작업실적을 DNPM에 보고할 의무

일단 채광작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광권자는 6개월 이상 채광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

채광권자가 DNPM에 매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광작업실적보고서에 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광물법 제 50 조).

- i. 채광된 광물의 개발, 운송 및 소비자에 대한 판매 방법
- ii. 광물의 종류와 특성, 광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개발 방법
- iii. 월별 실적 생산량, 재고량, 평균 판매가격, 목표생산량, 조세 및 토 시사용료의 지급
- iv. 작업인원의 수
- v. 광구 및 탐사작업에 대한 투자액
- vi. 회사의 매년 대차대조표

채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업방식을 좀더 효율화할 방법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광권자는 DNPM에 제출한 상세채광계획의 변경 또는 시장의 요구에 따른 생산량 변경계획을 DNPM에 요구할 수 있다.

다. Licensing Regime

지방행정부로부터 채취권을 발급받은 자는 채취 과정에서 인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DNPM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채취실적을 DNPM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탐사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광업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탐사작업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라. Permission Regime

Decree No.98,812 제 11 조에 따르면 특정광구에 대한 개발허가를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방 관보에 허가권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발을 개시할 의무
- 2) 허가증에 명시된 광물만을 개발할 의무
- 3) 허가증에 명시되지 않은 광물이 발견된 경우 즉시 DNPM과 협의를 개시할 의무, 발견된 광물이 채굴 가능한 상태인 경우, 허가증에 해당 광물을 추가할 의무
- 4) DNPM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조건과 관할 환경관련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작업을 이행할 의무
- 5)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류나 수자원 낭비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
- 6)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작업을 이행할 의무
- 7)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 8)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20일 이상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의무
- 9)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생산 및 상업화 실적을 DNPM에 보고할 의무
- 10) 개발작업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직·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정광구에 대한 개발허가를 반환하여야 한다(제 12 조 및 제 14 조).

- i. 광부 또는 제3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해를 입힌 때
- ii. 환경을 침해한 때

- iii. 광구를 훼손한 때
- iv. 공공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개발에 관한 로열티 지급

연방헌법 제 IX 장 제 20 조에 따르면, 모든 광물은 연방에게 귀속되므로, 광물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은 자는 연방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률 No.7,990 제 6 조에 따르면 금전보상(이하 «로열티»)의 액수는 선광의 최종단계를 완료한 광물생산판매(산업가공 이전 단계)로 인해 취득한 순이익의 3% 이내이다.

로열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 No.8,001 제 2 조에 따르면 로열티의 산정기준이 되는 순이익은 광물생산의 상업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 보험료, 운송 비용을 제외하고 판매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을 말한다.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로열티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물의 종류	비율
알루미늄 광석, 암염, 마그네슘, 칼륨	3%
철, 석탄, 기타 광물	2%
귀금속, 유색금속, 기타 희귀금속	0.2%
금	광업기업의 경우 1%, 그 밖의 경우 0.2%

로열티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률 No.7,990 제 8 조). 한편, DNPM 은 로열티의 적정성과 적기 지급을 감독하고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률 No. 8,876 제 3 조).

5. 환경관련 인허가

어떤 법적 근거와 권리에 의해 광업권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환경관련 인허가의 취득이 요구된다. 채광권 또는 채취권에 근거한 광물채굴은 관

할 환경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Decree No.98,812 제 18 조), 특정광구에 대한 개발허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할 환경기관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제 2 조).

브라질에서는 세 종류의 환경관련 인허가가 있는데, 사전허가, 설치허가, 운영허가가 그것이다. 사전 허가는 타당성 조사 및 계획 단계에서 발급되며, 설치허가는 광구의 개발 및 광업시설의 설치, 환경관리 단계에서 발급된다. 한편, 운영허가는 개발단계에서 발급된다.

III. 브라질의 석유·가스 법제

1. 개요

1995년 11월 9일 수정헌법 제 9호 제 177조에 따라⁷ 브라질 연방정부는 브라질내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액화탄화수소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내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은 브라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과 업무집행기관을 브라질에 두고 있는 회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석유법은 브라질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의 국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외국기업들도 브라질 법률에 따라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허권 취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 석유법 및 가스법의 제정

석유·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브라질의 핵심 법률체계는 석유법으로 불리는 법률 제 9478/97호(이하 “석유법”), 2009년 3월 새로 제정된 법률 제 11909/09호(이하 “가스법”)와 법률 제 12315호⁸이다. 전통적으로 브라질은 1975년 이래 모험서비스계약(Risk Service Contract)을 사용해 왔었으나 석유법제정 이후부터는 양허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석유법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석유개발·생산의 독점과 관련한 각종 활동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석유법 제 3조에서 제 5조는 연방정부의 독점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석유나 천연가스의 소유권은 연방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제 3조), 석유·천연가스의 탐사나 개발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제 4조), 연방정부의 독점권 행사는 브라질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본점과 업무집행기관의 소재지를 브라질에 두고 있

⁷ 헌법 제177조에서는 양허 또는 인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① 원유·천연가스·기타 액화탄화수소 탐사 ② 정제 ③ 석유제품 및 부산물의 수출입 ④ 원유 및 부산물의 해상 수송(파이프라인 운송 포함)이다. 일반적으로 해상수송은 인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⁸ 법률 제12315호는 암염하층(Pre-salt) 및 전략지역에서의 석유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석유법은 암염하층 및 전략지역을 제외한 모든 브라질내 영토에서의 석유 개발·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는 기업에 대한 양허(Concession)나 승인(Authorization)를 통해 실시되는 것(제 5 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1953 년 페트로레우 브라질레이루(Petroleo Brasileiro, 이하 “페트로브라스”)라는 국영석유기업이 설립된 이후로부터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법률에 의해 줄 곳 한곳의 국영기업이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페트로브라스의 독점적인 체제는 1995 년 11 월 9 일 수정헌법 제 9 호 및 1997 년 8 월 6 일 연방법률 제 9478/97 호에 의해 변경되었다. 수정헌법 제 9 호의 핵심 내용은 시장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석유산업을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것이었다. 연방법률 제 9478/97 호는 페트로브라스에 의한 독점 체제가 종식되면서 석유·가스 개발 및 생산에 민간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석유 및 천연가스를 탐사·생산·수입·운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는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민간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⁹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가스법은 천연가스의 처리·가공·저장·액화·재기화·마케팅·수송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가스법은 아직까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부하위 규정들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천연가스 탐사·개발·생산은 여전히 석유법에 의해 규율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석유법과의 차이점은 천연가스의 수송 및 저장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자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예를 들어 사업자에게 양허계약을 통해 30 년간(1 회에 한해 동일 기간 연장 가능)의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투자 및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스법에 따라 구매인(Commercial Purchaser)이 건설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외국인 생산자로부터 직접 가스를 수입하도록 허용(일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정부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 도 있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 파이프라인 처리용량에 따른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연방헌법은 주(State)만이 경계 내의 천연가스의 배분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가스 수출입을 포함한 주(Inter-state)간의 가스 배분과 관련하여 규율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가스법은 광물에너지부가 법률 제 11079/04 호에 따라 정부민간합작 회사(Public-private partnership)를 이용하여 신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개

9 석유법 제42조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입찰가가 동점인 경우, 양허권은 페트로브라스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발하거나 기존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확대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0년 들어 브라질 연방정부는 암염하층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들은 4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2010년 7월과 12월에 각각 서명·공포되었다. 첫 번째 법률은 Petrosal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Petrosal은 암염하층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암염하층의 석유 매장지 50억 배럴을 페트로브라스에게 제공하여 페트로브라스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법률은 암염하층 석유에서 나오는 정부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암염하층 매장지 개발·생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산물분배계약을 제도를 수립하였다. 기존의 양허제도와는 달리 새로운 생산물분배계약 제도하에서는 페트로브라스가 모든 생산물분배계약의 단독사업자가 되고 모든 암염하층 개발 프로젝트의 최소 30% 지분을 보유하도록 법률은 정하고 있다.

3. 감독기관

석유법에 따라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National Council of Energetic Policy)와 국가석유청(National Petroleum Agency)이 설치되었다.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의장은 광물에너지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 이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책임으로 담당하고 있다.

국가석유청(National Petroleum Agency)은 연방정부기관으로 브라질에서 석유 개발활동과 관련되어 각종 법규제정, 규제 및 감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석유청은 광물에너지부와 협업을 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다. 국가석유청은 석유법, 명령 2455/98 그리고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의 규정들에 따라 양허권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각종 자원 데이터를 수집·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가스법에 따라 우발사태위원회(Contingencies Committee)를 설치하여 천연가스의 공중중단 등 임시적인 중단과 관련하여 우발사태 대처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4. 양허계약의 주요 내용

양허계약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탐사단계이고, 두 번째는 개발/생산 단계이다.¹⁰ 탐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 년에서 8 년이며, 개발/생산 단계는 최대 27 년(동일 기간으로 연장 가능, 단 기간 만료 12 개월 전 국가석유청의 승인 있어야 함)까지 허용이 된다. 탐사·개발·생산 관련 양허권은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리스크를 부담하여 원유·천연가스를 탐사·개발·생산하고 성공 시에는 해당 지역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로열티·특별참여금·세금 등을 포함한 모든 납부금을 납부한 후 채굴된 제품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한편 개발/생산 단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자는 국가석유청에 통보를 하고 몇몇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석유·가스 발견계획 및 개발계획 평가서(Evaluation of Oil and Natural Gas Discoveries Plan and the Development Plan)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석유·가스 발견계획 및 개발계획 평가서는 탐사단계 동안의 석유·가스의 상업적 발견을 위한 방법 및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최근의 양허계약 조건을 보면 사업자는 석유·가스 발견계획 및 개발계획 평가서에 대한 국가석유청의 승인이 난 후에만 상업적 발견에 대해 공표를 할 수 있다. 국가석유청 시행규칙 259/2000 에 따르면, 국가석유청은 60 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는 90 일내 상업적 발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석유청에 제출하는 개발계획은 석유·가스의 개발 및 생산 시 업계 최고수준의 관행을 따르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계획은 작업계획 및 투자계획도 아울러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계획은 상업적 발견 공표 후 180 일 이내 국가석유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석유청은 개발계획에 대한 180 일 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만약 국가석유청이 180 일 이내 답변이 없는 경우, 해당 계획은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5. 탐사·개발·생산 절차 및 내용

사업자가 원유·천연가스를 탐사·개발·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석유법·하위 법

10 석유법 제24조

규·입찰 초청장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브라질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과 업무집행기관의 소재지를 브라질에 두고 있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국 기업도 입찰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외국 기업이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양허계약 체결 전까지 외국 기업은 반드시 브라질 내 법인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국가석유청은 석유 탐사·생산권과 관련한 입찰을 주관하며 사업자와 양허계약을 체결한다. 브라질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은 ① 국가석유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양허권을 취득하는 단계 ② 석유매장을 확인하는 탐사단계 ③ 석유매장을 확인하고 생산광구로 확정 짓는 단계 ④ 상업성판단단계 ⑤ 생산계획단계 ⑥ 석유생산단계 ⑦ 생산기간 종료 후 광구를 국가석유청에 반환하는 단계의 7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이 중에서 양허권을 취득하는 단계는 세부적으로 ① 입찰 의사 표시 ② 참가비 납부 ③ 초기평가를 위한 탄성과 자료가 포함된 데이터 패키지 수령 ④ 법률·기술·자금조달 자격 ⑤ 입찰보증금(Bid bond) 제출 ⑦ 입찰 ⑧ 낙찰 ⑨ 낙찰 확인 ⑩ 양허계약 체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입찰 참가자들에게는 법률·기술·자금조달 자격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컨소시엄 형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특히 컨소시엄계약은 브라질 연방법률 제 6404/1976 호(이하 “회사법”) 제 278 조와 제 279 조 및 석유법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특히, 석유법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연대 및 각자 양허계약에 명시된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¹¹

입찰 대상자는 점수·가중치를 계산하여 선정된다. 국가석유청이 평가에 사용하는 공식에는 3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데, ① 초고가의 서명 보너스 제안 ② 현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현지조달 확약 ③ 최소탐사계획에 대한 투자금 이다. 그리고 각각의 가중치는 서명 보너스 금액이 40%, 현지조달이 20%, 최소탐사계획에 대한 투자 내용이 40%이다.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광구를 할당을 받으면 해당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과 생산된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한편 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연방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와 특별참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특별참여금은 양허계약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생산량과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¹¹ 석유법 제38조

6. 사업권·지분 양도 및 처분

사업자 광구 양허권 양도 및 처분을 하기 위해 사업자는 국가석유청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세부적인 승인절차는 양허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규율된다. 단, 이러한 절차가 모든 양허계약이 동일하지는 않고, 양허계약마다 약간씩 절차나 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한편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국가석유청의 공식적인 인가가 있는 후에만 이러한 지분 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석유청의 인가 전 지분 또는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양도한 경우 벌금 대상이 되며, 이러한 양도는 무효로 간주된다.

사업자의 주주들은 양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이 질권실행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주식 소유권 이전에 대해 국가석유청이 인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따라 이전이 허용될 수도 또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7. 광구 이용료

사업자는 일반적인 세금을 제외하고도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4 가지의 요금¹²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석유청에서 주관한 광구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양허계약 체결에 대한 서명보너스
- ② 석유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로열티
- ③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
- ④ 석유생산량에 따라 양허계약에서 정한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정부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참여금

서명보너스는 입찰 과정 중에 해당 광구에 참여하는 낙찰받는 기업이 지급하게 되는 비용으로, 입찰초청장에 이미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양허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중요

¹² 석유법 제45조

수입원은 서명보너스보다 로열티와 특별참여금이다. 일반적으로 로열티는 광구에서 생산되는 석유·천연가스에 대해 5~10% 정도로 책정되며, 해당 지역의 지리적 위험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이 된다.¹³ 연방정부의 특별참여금은 생산규모가 크거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정부가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받는 배당금을 의미한다.¹⁴ 특별참여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총수익에서 로열티, 생산비용, 운영비, 감가상각, 세금을 제한 부분에서 생산성에 딸 0~40% 정도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에 반해 토지사용료는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임차료 성격의 비용이나 연방정부가 비용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 일반 임대료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광구를 보유하기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개발이나 생산활동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토지사용료는 탐사기간에는 km 당 10~500 헤알, 생산준비기간에는 km 당 20~1000 헤알, 생산기간에는 100~5000 헤알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 국가석유청의 기준으로 보면 지급액 부담율이 석유 또는 가스 생산물의 0.5%에서 1.0% 수준이다.

이외에 사업자는 법인세 34%¹⁵, 사회기여세(PIS·COFINS) 3.65% 또는 9.25%, 부가가치세(ICMS)¹⁶ 18%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양허권의 소멸

석유법에 따라 양허권은 다음의 경우 소멸한다.

- 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② 정부와 사업자간 합의를 한 경우
- ③ 양허계약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탐사단계 종료 시점에 양허계약에 명시된 상업적 발견이 되지 않은 경우
- ⑤ 탐사단계 종료 시점에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을 반환하는 경우

¹³ 석유법 제47조

¹⁴ 석유법 제50조

¹⁵ 법인세(IRPJ) 25%(실질이익의 15% + 월수익 2만 헤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 + 기업연간이윤세(CSSL) 9%

¹⁶ 주(州)세금으로 상품유통 서비스세라고 하며, 일종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것으로 각 주에 따라 징수되며, 일반적으로 18%~25%세율이 적용된다.